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일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모집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40건

□ 접수기간 : 2024년 8월 2일 ~ 예산소진시까지

2. 세부내용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자격 안내〉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소상공인 기준[별첨1] 참조
- ▶ 사업지원 제외 업종[별첨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6개월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 ▶ 파산(면책)·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
- ▶ 채무자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규모 고려 적합한 자
-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관련 채무자

□ 지원규모 : 공적채무조정 4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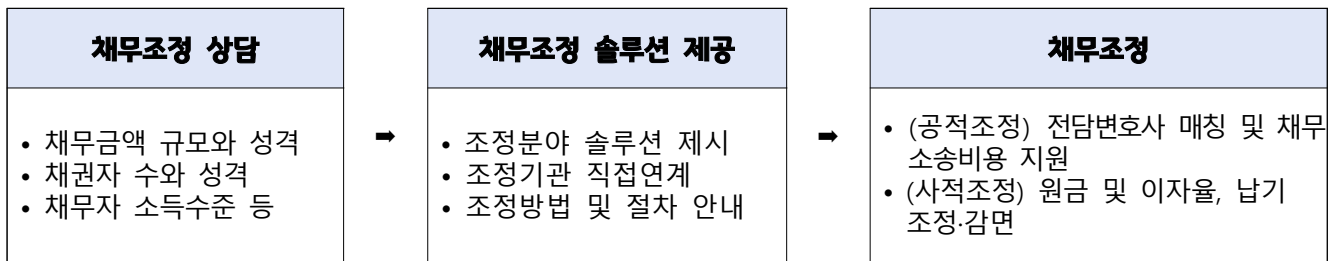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지원, 이외 송달료 등 제반비용 제외)

□ 지원방법

-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 구분
- 공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지원 및 파산·면책 및 회생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밀착 지원 실시
- 사적채무조정 구분 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 지원절차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예정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폐업사실 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류	1. 신청서[서식 제1호]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2호]
	3.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5.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hko@jihyanglaw.com) 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실시함.

□ 신청문의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별첨 1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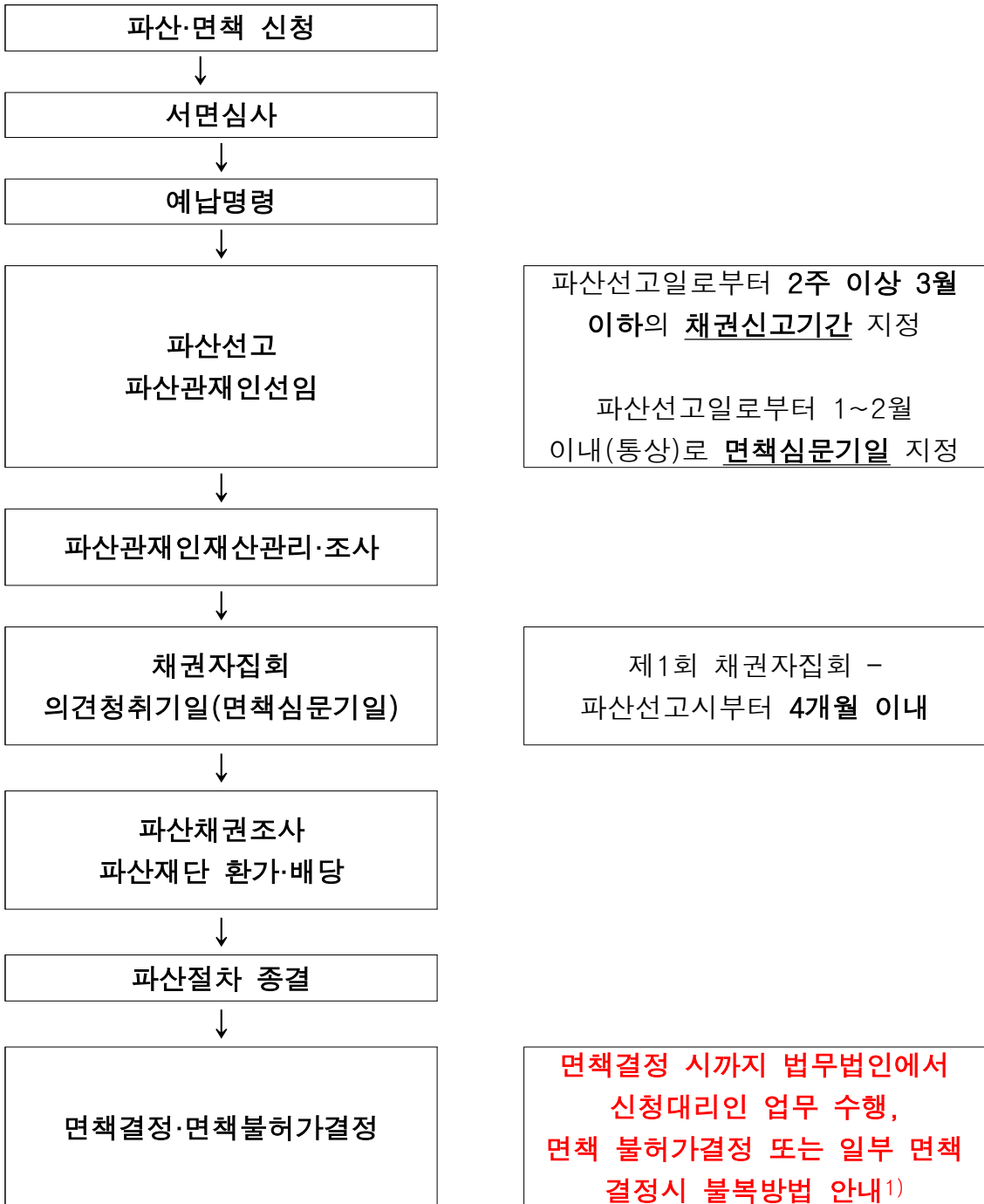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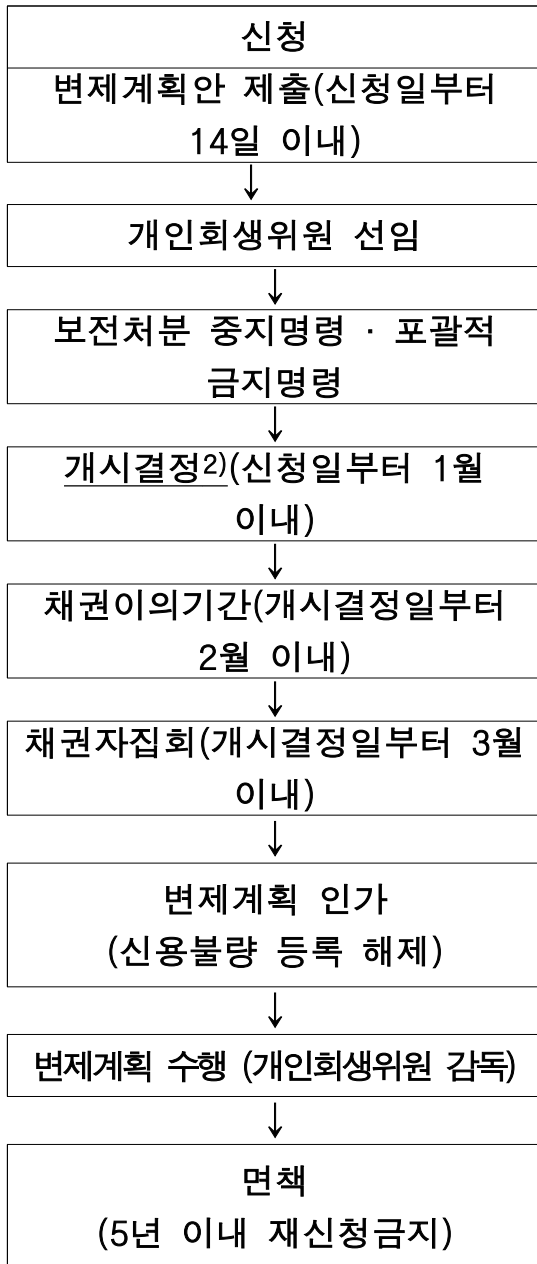
[별첨 3호] 공적채무조정 수행절차 및 안내

1. 개인파산·면책 절차 흐름도



1)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일부 면책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심은 대리하지 않음.

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시 결정 시까지
법무법인에서
신청대리인 업무 수행

개인회생위원 주관에 따라
변제계획 수행 업무 진행

2) 법무법인에서 개시 결정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후 법원에서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주관에 따라 변제계획 수행 업무가 진행

3. 개인회생 ·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채무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 제한 없음